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07,131,761	15,213,953
일반회계	460,665,132	13,819,954
특별회계	46,466,629	1,393,999
기타특별회계	46,466,629	1,393,999
상수도 특별회계	14,174,297	425,229
수질개선 특별회계	22,648,879	679,46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5,646	11,56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31,120	30,934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2,154,653	64,640
주차장 특별회계	2,166,340	64,990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3,905,694	117,17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973,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